# 개발 용역 계약서

(주) 아토 (이하" 갑")와 에임시스템 주식회사 (이하 "을")은 쌍방 합의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 후 각 각 1통씩 보관한다.

계약일자	2005년 6월 7일
계약 명	APT6000 HARP-USG/BPSG 장비 제어 시스템 구축
계약금액	₩50,000,000
부가세	₩5,000,000
계약기간	2005년 5월 16일 ~ 2005년 8월 31일
하자보증기간	최종검수 후 6개월
대금지급조건	1. 지급횟수: 총3회
	2. 지급액(부가세 별도)
	- 계약금 30%: 계약 시 - ₩15,000,000
	- 중도금 30%: 장비 설치 시 - ₩15,000,000
	- 잔 금 40% : F.A.T 완료 후 — ₩20,000,000
	3. 지급방법:"을"이 청구한 달의 익월 갑의 결재일에 지급
	(갑의 결재조건에 준함)
특이사항	1. 본 개발 프로젝트의 산출물인 APT6000 HARP-USG/BPSG 장
	비 Controller의 Run-time license 가격은 장비 당
	₩7,500,000으로 하고, "갑"은 "갑"의 고객에게 이를 판매 시
	마다 "을"에게 이를 지불한다.
	2. OptiCTC 외에 필요한 System S/W(windows, SQLServer 등)와
	CPU box 등 H/W 장착 비용은 전적으로 "갑"이 부담한다.
	3. UMS(Upgrade & Maintenance Service): 추후 협의
	4. 개발 초기 단계부터 "갑"의 S/W Engineer 1인과 함께 진행
	(Source Open / Back up 교육) 한다.
	5. 최초 Spec 협의 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발비를 산
	정한다.
	6. 계약 종료일 이후 추가 개발 및 일정 지연시 별도 M/M 투입
	에 의한 개발비를 산정한다

"갑" ㈜아토

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3-1 대표이사 문 "≘"

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15-6 대표이사 김 만 7

에임시스템㈜





## 제1조(계약목적)

본 계약은 "갑"이 "을"에게 도급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한다.

### 제2조(계약대상)

"을"은 APT6000 HARP-USG/BPSG 장비 제어 시스템을 양사가 합의한 개발 규격에 준하여 개발한다.

## 제3조(중도해지)

- 1. "을"은 본 계약 이행 중 "을"의 귀책사유로 부득이 중도해지를 해야 할 경우, "갑"이 기 지급한 대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손해와 손실에 대해 "갑"은 "을"에 게 손해 (손실)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2. "갑"은 "을"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,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.
  - 1) "을"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
  - 2) "을"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에 본 계약을 수행하지 않거나, 또는 성 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"갑"이 판단할 때
  - 3) "을"이 "갑"에게 중대한 손해 또는 위해를 끼친 때
  - 4) "을"이 정부로부터 영업의 취소,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때
  - 5) "을"이 파산, 회사정리 또는 타 회사와 합병한 때
  - 6) 재해 또는 기타 부득하한 사유에 의해 "을"이 본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"갑 "이 인정한 때
- 3. "갑"의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, "갑"은 "을"에게 중도해지로 인하여 발생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.

## 제4조(계약변경)

- 1. "갑"의 귀책사유로 개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, "갑"은 "을"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, "갑"과 "을"간의 합의에 따라 페이지 1의 "계약내용요약"표의 계약금액과 계약기간 등을 조정 할 수 있다.
- 2. "갑"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일시 중지하여야 할 경우, "갑"은 "을"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, "갑"과 "을"의 합의에 따라 계약수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.
- 3. 천재지변 혹은 기타 "을"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 또는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계약 기간 내에 개발을 완수할 수 없을 때에는 "을"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"갑"에게 서면 통지하며 "갑"과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### 제5조(검수 및 납기)

1. "갑"이 산출물 검수를 실시하되, 검수를 위해 필요한 제반비용은 "을"이 부담한다.



- 2. 검수기준은 "갑"의 제시기준에 따라 사전에 작성된 검수 표에 의하며, 검수에 합격하면 "갑"은 검수확인서를 "을"에게 교부한다.
- 3. "갑"은 필요 시 산출물 완성 전, 중도검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"을"은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한다.
- 4. 납기라 함은 산출물을 "갑"이 검수 가능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할 예정일을 의미한다. 납기 전 산출물 제출은 "갑"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, "을"은 납기지연 이 예상되는 경우, 지연사유와 제출예정일을 "갑"에게 사전에 서면 통지하고 "갑"의 결정에 따른다.

#### 제6조(패널티)

개발기간 내 개발규격 미 구현 또는 1개월에 2회 이상의 논리적 에러발생시에는 최후 개발기간 후 1개월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의 "을" M/M 비용의 1/2을 삭감한다.

#### 제7조(위험부담)

산출물 검수완료 전에 산출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, 훼손되었을 경우, "을"은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모든 산출물 제작 책임은 "을"이 부담한다.

# 제8조(손해배상)

"을"은 "을"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"갑"에게 발생하는 직접, 간접 및 유형, 무형의 손해일체를 배상한다. 또한, "을"의 의무불이행 혹은 용역산출물에 대한 보증의위반으로 "갑"이 그의 고객이나 제3자로부터 클레임을 받을 경우 동 클레임의 해결을위한 비용을 "갑"에게 보상하며, 그 배상액은 본 계약금액을 한도로 한다.

## 제9조(하자보증)

- 1. "을"은 산출물의 검수 완료 일로부터 페이지 1의 "계약내용요약"표상의 하자보증기간 동안 산출물에 대하여 추가대금 없이 하자보증을 한다.
- 2. 하자보증기간 도중, 논리적 Error는 무상으로 수정하며, 합리적인 수준의 기능 추가 및 개선의 경우 추후 협의를 거쳐 지원한다.
- 3. 하자보증기간 이후 "을"의 Product에서 발생하는 치명적 오류에 대해서는 Upgrade Patch를 제작/제공 한다.
- 4. 하자보증기간 이후의 유지보수는 "갑"과 "을"간에 별도의 유지보수계약을 체결에 의한다.
- 5. "을"이 F.A.T 완료 후 정상적으로 장비제어기 영업 및 기술 지원을 할 수 없을 경우, 3년 이내는 즉시 통보하고, 3년 이후에는 최소한 1년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"을"은 "갑"에게 APT6000 HARP-USG/BPSG 장비의 정상적 유지 및 보수 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한다.

## 제10조(기술지원)

"을"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료제공, 기술지원, "갑"(또는 고객)의 요원교육 등을 개발 용역 내역서에 준하여 수행한다.

#### 제11조(법규준수)

"을"은 본 계약이행에 있어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, 법규위반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와 민형사상의 손해는 "을"이 부담하고 "갑"의 손해가 있으면 이를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.

#### 제12조(제세공과)

계약이행에 따라 "을"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의 일체의 비용은 "을"이 부담한다.

## 제13조(비밀유지)

- 1. "을"은 "갑"의 모든 기술정보(경영, 기술, 자료, 지식)를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며, "갑"의 승인 없이 기술정보를 계약이행 목적 이외에 이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열람 또는 누출하여서도 안 된다.
- 2. 본 조항은 "을"의 종업원, 퇴직자 및 하도급업자에게도 적용되며 본 조(16조)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되는 "갑"의 손해를 "을"이 배상하고 제3자와의 분쟁은 "을"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.
- 3. 계약만료나 해지(해제) 보는 그 의 요구 시 "갑"이 제공한 기술정보와 그 복사물, 생산물 일체를 지체 없이 "갑"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#### 제14조(대금청구 및 지불)

대금 지금조건은 본 계약서 페이지 1의 "계약내용요약"표상의 대금지급조건에 의거하여 "갑"이 "을"의 청구 시 지급한다.

#### 제15조(원 계약상의 의무)

본 계약상, "을"의 업무가 "갑"의 고객에 대한 계약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하도급 업무일 경우 "을"은 "갑"과 "갑"의 고객간의 계약("원 계약")상 "갑"의 의무 중 해당 부분을 승계 부담한다.

## 제16조(지적재산권)

본 계약에 의해 "을"이 "갑"에게 공급한 납품 물과 계약이행 시 산출되는 프로그램과 그 노하우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(저작권 및 판권 포함)은 "갑"의 소유로 한다.

## 제17조(의무유지)

"을"은 본 계약 만료(해지) 후에도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.

- 1) 제9조(하자보증)
- 2) 제13조(비밀유지)

## 제18조(양도금지)

"을"은 "갑"의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 또는 양도할 수 없다.

## 제19조(비용처리)

본 계약 이행 시 발생되는 비용(개발자 식비, 교통비 등)은 "을"이 전적으로 부담한다.

# 제20조(협의 및 조정)

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"갑"과 "을"의 합의에 따른다.

## 제21조(합의관할)

본 계약상의 합의관할 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.

YOU YES



- 끝 -